

 행정자치부	<h2>보 도 자 료</h2>	담당자 및 연락처	주소정책과
	2016년 8월 4일(목) 조간 (8. 3. 12:00 이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		과 장 정종훈 02-2100-3660 사무관 정진호 02-2100-3661

## 원룸,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받기 더 쉬워진다

### -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권으로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가능

- 행정자치부(장관 홍윤식)는 신청하면 부여했던 원룸,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(안)을 입법예고 한다.
-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“101동 3층”,“202동 302호”와 같은 건물의 동·층·호수를 말한다.
-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·층·호수가 등록되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“신청주의”로 운영되어 왔다.
  - 그러나“신청주의”는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유자·임차인의 바쁜 일상과 관심소홀 등에 따라 그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.

\*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('15. 11.), 79.1%가 “신청주의” 모른다 답변

-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·방치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·수취가 곤란하고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었다.

- 이에 행정자치부는 원룸,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현재의 신청주의와 병행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통보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.
-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“직권 부여제도가 신설되면 원룸,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 부여가 보편·활성화되어 세입자들의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말했다.
- 시장 등의 상세주소 부여 절차와 소유자·임차인 이의신청 방법 등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 규정된다.

## 참고 상세주소 제도

### □ 개념 및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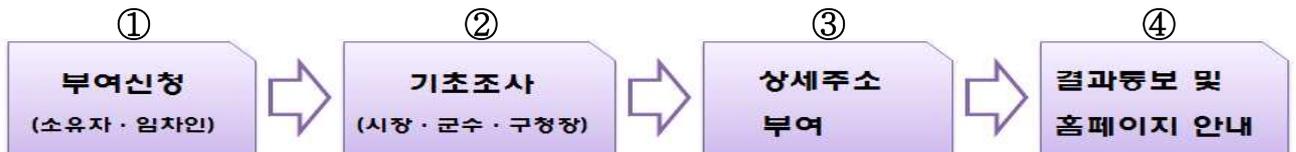
- (개념) 상세주소란 아파트 등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동·층·호수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원룸, 다가구주택 등의 동·층·호수임(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여 법정주소로 사용)



- (추진배경)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을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는 것과 달리 원룸·다가구주택 등은 신청에 의하여 상세주소 부여
  - 우편·택배 등의 전달·수취가 편리,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

### □ 부여절차

- (현행) 신청주의



- (개선) 신청주의(전과 동일),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권부여 병행  
<시장·군수·구청장 직권부여 절차>

